

결 정

2018-1-2 독자불만처리

불만제기인 ○ ○ ○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주 문

스포츠서울 2017년 12월 27일자 「다들 하고 있잖아? - 심야고속버스에서 으
홍홍」 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 유

1. 위 만화에 대한 독자의 불만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19금 표시가 없길래 아이들이 봐도 되는 만화인 줄 알고 클릭해봤더니 포르노
에나 나올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있던 아이들이 볼까봐 황급히 꺼버렸지만
상황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이런 만화는 성인인증장치를 걸어놓아야 하
는 것 아닙니까? 신문이 무슨 포르노 사이트도 아니고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
다. 즉각 시정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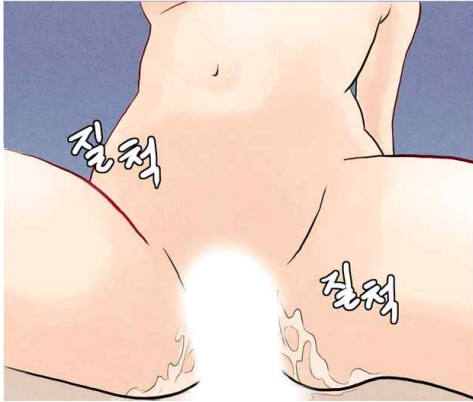
2. 이에 앞서 스포츠서울은 다음과 같은 만화를 게재하였다.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84372>>







<http://imnews.sportsseoul.com/cartoon.sportseoul/webtoon.html?idx=1274&no=23123>

3.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만화는 성인물에서나 볼 수 있는 노골적인 성관계와 자위행위 장면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상황 설정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고 불건전하여 미성년자가 보기에 부적절하다.

스포츠서울(온라인판)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매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만화를 성인인증절차도 없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책임 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이러한 행태는 미성년 독자의 건전한 성의식 함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신문의 품위까지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만화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

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만화 심의기준 2, 6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강희	강희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신문소설 만화 심의기준

2. 혼음, 윤간, 변태적 성해위 등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것
6. 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